

아이누 독점적 어업 청구권에 관한 소송에 관한 고찰: 기후환경적 배경·역사적 배경·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

김석희**

목 차	
I. 서론	IV. 아이누 독점적 어업권 주장의 역사적 배경
II. 선주민의 문화권과 경제권에 대한 문제제기	V. 아이누의 독점적 언어어획권 주장의 의미
III. 일본 선주민 독점적 어업권 청구 소송의 배경과 판결	VI. 결론

| 논문요약 |

이 논문은 최근 일본에서 있었던 아이누민족의 홋카이도와 일본정부를 대상으로 한 독점적 어획권 청구소송의 원고 패소 판결을 둘러싸고, 그 환경적·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SDGs)의 의미를 재고한다. 우선 이 소송의 환경적 배경은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및 어획량의 감소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역사적으로는 13세기 이후 일본정부의 자의적이고 폭력적인 산업 제한, 식민지배와 연동된다. 일본정부는 전지구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 차원에서 아이누의 선주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최근 아이누 민족에 대한 패소판결은 일본정부의 입장이 경제적인 측면에서(언어나 전통문화 측면과는 달리) 대단히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아이누 민족의 독점적 어획권 청구소송의 패소는 문화정체성과 자치적 경제권 사이에 존재하는 장벽을 보여줄 뿐 아니라, 진정한 선주권이란 정치 경제적 자립을 포함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A2A03066588).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강사

▪ 키워드: 기후변화, 언어, 홋카이도, 아이누, 선주권

I. 서론

기후 변화는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추가된 즉각적이고도 거대한 압력이다. 북극해 해빙의 영향으로 수온은 높아지고 이는 매우 즉각적으로 북극해 주변의 선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주었다. 북극해 인근지역인 일본의 북부지역에서도 주요 어종인 연어의 어획량이 급격히 줄었고, 이 시기에 제기된 아이누 민족의 언어 어획에 대한 ‘선주권’ 소송은 2024년 4월 18일에 기각되었는데, 일본정부는 연어가 ‘공공재’이며, ‘보호’ 차원에서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는 소수민족의 선주권 문제의 충돌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온난화 시대를 살아가는 북극해 인근 지역 주민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기후변화가 야기한 선주권 소송 판결에 나타난 선주민의 권리 문제를 고찰한다.

II. 선주민의 문화권과 경제권에 대한 문제제기

본고는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기후변화가 야기한 선주권 소송’ 문제를 기후문제와 선주권, 두 개의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가 발표된 이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세계적 인식이 확대되어 왔고, 그런 가운데 일본은 ‘일본에는 선주민이 없다’고 하던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고 아이누 민족의 선주권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선주권은 인정하되 경제권은 인정할 수 없다면 선주권 인정은 한계가 있는 것이다.

선주민의 인권에 관한 선행연구는 지역적으로 아메리카 대륙 국가에, 학제적으로는 민족어의 사용, 민족문화의 허용과 같은 문화 정체성의 허용 측면

에 집중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김향섭 2017, 41-67; 서지현 2024, 107-130). 소수민족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적 측면의 연구는 희소한 편인데, 그것도 주로 중앙정부의 지원 방식에 관한 내용이다(VADIM 2022, 67-90).

다문화주의를 수용하거나,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소수민족의 과거 생활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사실상 선주권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이 아니다. 왜냐하면, 소수민족을 과거에 박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소수민족들이 진정한 선주권을 인정받으면서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전통문화 자체가 지속적으로 경제성을 확보해야 가능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선주권에 대한 아이누의 주장과 이에 대한 일본의 판결은 현재 세계가 직면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장벽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첫째, 일본 선주민의 독점적 어업권에 관한 청구소송이 야기된 배경으로 기후변화와 수온상승 등의 문제를 점검하고, 둘째, 이 문제를 역사적 관점에서 살핀 뒤, 본질적으로 소수민족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기 위해 인류가 고려할 점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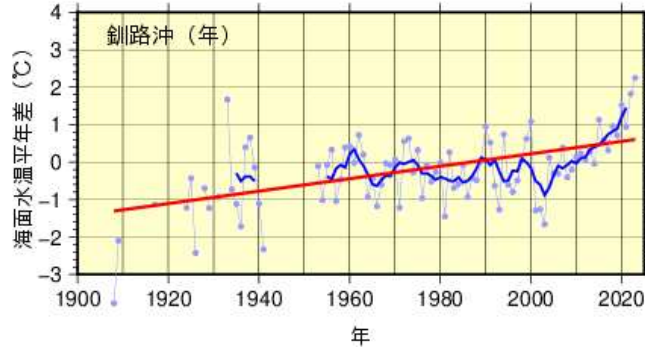
Ⅲ. 일본 선주민 독점적 어업권 청구 소송의 배경과 판결

1. 수온상승과 홋카이도의 연어 어획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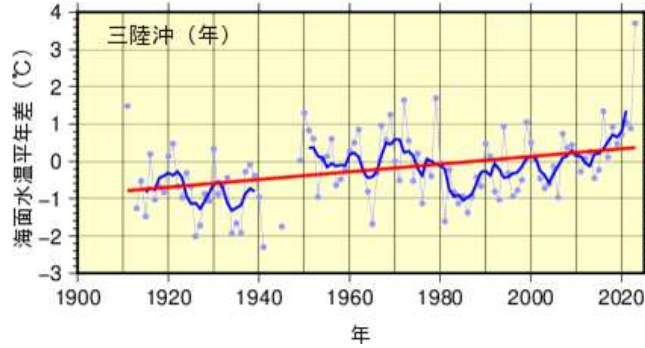
우선, 홋카이도 지역의 기온 상승과 어획량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에 따라 좀 더 민감해진 어업권 분쟁을 살펴보겠다. 수온상승은 세계적인 추이지만, 본고에서는 아이누족과 관련이 깊은 홋카이도 지역을 중심으로 다룬다. 일본의 기상청이 제시한 홋카이도 지역의 수온상승 추이는 다음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관측을 시작한 이래 지속적으로 상승추세에 있다.¹⁾

1) 일본기상청, https://www.data.jma.go.jp/kaiyou/data/shindan/a_1/japan_warm/japan_warm_larea.html?larea=1. (2024년 5월 14일 검색)

<그림 1> 홋카이도 쿠시로 해역의 연평균수온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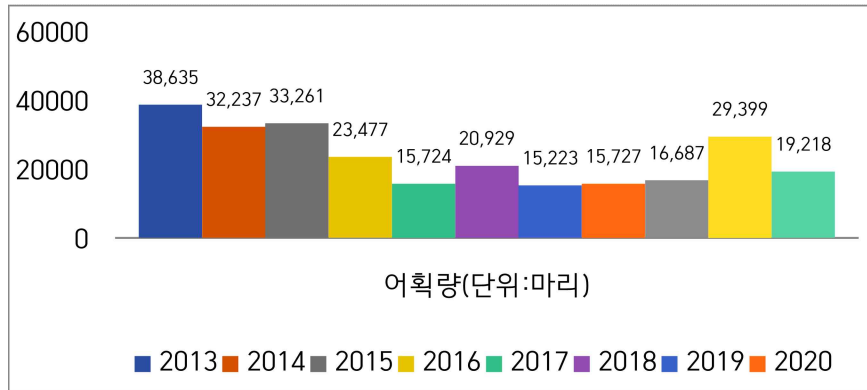
<그림 2> 홋카이도 쿠시로 해역의 연평균수온 변화추이



일본의 북단인 홋카이도의 선주민인 아이누 민족의 경우 오랜 세월 어업, 특히 연어잡이가 주요 산업이었다. 그러나 수온 상승 경향과 맞물려 최근 10여년간 연어의 어획량은 현저하게 줄었다. 홋카이도 연합해구어업조정위원회(北海道連合海區漁業調整委員會)의 보고에 따르면 2013년에 38,635마리였던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급감하여 2017년에는 15,724마리까지 줄어들었다. 2022년에는 일시적으로 29,399마리의 회복세를 보였지만 2023년에는 다시 19,218마리로 감소하였다(<그림 1>²⁾ 참조).

2) 본문의 그래프는 다음의 자료를 근거로 작성함. 홋카이도 도청, <https://www.pref.hokkaido.lg.jp/sr/ggk/akisakegyokakusokuhou.html>. (2024년 5월 12일 검색)

<그림 3> 연합해구어업조정위원회(北海道連合海區漁業調整委員會)



이것은 홋카이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2023년 11월 22일자 *NHK*의 보도에서는 일본에서 홋카이도에 이어 연어가 많이 잡히는 아마가타현 사카타시의 경우에도 2023년 가을 어획량은 전년대비 17%, 2년전대비 28%에 그쳤다. 일본 본토(혼슈)에서도 연어 어획량은 크게 급감했다. 9월 말 하천에서 잡힌 연어 수는 전년대비 9%에 그쳤으며, 태평양과 가까워 사정이 좀 더 나은 미야기현이나 이와테현도 전년 대비 어획량이 10~20%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연어 어획량 감소의 주된 원인을 해수면 온도 상승이라 판단하고 있다. 가에리야마 마사히데(歸山雅英) 홋카이도대학 교수는 일본 기상청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마가타현 연안의 2023년 9월 평균 해수면 수온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0년 동안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0월에도 해수면 수온은 예년보다 1~2도 높았다. 일본은 2023년 여름 기록적인 더위를 겪었고, 11월에도 도쿄 기온이 25도를 넘겼다. 해수면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면 먼 바다로 나갔던 연어가 회귀할 타이밍을 기다리는 단계에서 성숙해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연어 치어가 방류됐던 3년 전에도 해수 온도가 높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장을 못한 연어들이 회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분석이다. 보통 연어 치어는 강을 내려간 후 바다로 떠나기 전 연안에 머물면서 성장하는데, 수온이 상승하면 연어가 연안에서 성장, 체류하는 기간이 짧아져 완전히 성장하기도 전에 연안을 떠나면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게 된다. 심지어 치어를 키워낼 연어알도 크게 부족해진 상황이다. 아마가타현은 일본 각지에 연어알을 공급하고 있는데, 연

어 어획량 자체가 감소하면 치어 부화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0년 이상 역사를 자랑하는 연어 양식업 자체가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조차 나오고 있다. 가에리야마 교수는 “해수면 수온이 높으면 연어들이 지내기 어려운 환경이 된다.”라며 “2024년도에도 이 상태가 지속되면 연어 치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아시아경제』 2023/11/22).

2. 어획량 감소에 따른 아이누 민족의 연어 어획 독점요청에 관한 재판

연어 어획량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홋카이도 우라호로초(浦幌町)의 아이누 민족단체가 현지 하천에서 연어를 잡는 것은 선주권의 일부라며 확인을 요구한 재판에서 청구를 기각당한 사건이 있었다. 원고는 이에 항소 의지를 표명했으므로 당분간 이 재판은 진행형일 전망이다. 1심에서 삿포로 지방법원은 올해 4월 18일, ‘아이누 문화를 공유하는 권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는 한편, 경제 활동으로서 ‘공공재’인 연어를 취할 권리는 없다면서 소송을 기각했다. 이 재판에서는 원고가 확인을 요구했던 ‘선주권’에 대한 사항을 판결문 안에서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4년 전에 시작된 이 재판은 하천에서 연어를 잡는 것은 수산자원보호법 등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아이누가 연어를 잡아 온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우라호로초의 강에서 연어를 잡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한 것인데, 삿포로 지방법원은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반론하면서도 ‘아이누 문화를 향유할 권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제 활동으로서 연어를 잡을 권리에 대해서는, 하천은 공공의 물건이기 때문에 ‘특정 집단이 배타적으로 어업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고 인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어 소송을 기각했다. 원고 측은 하천을 ‘공공재’로 관리하는 국가가 어떤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 하는 흐름이 되어 버렸고, 그 결과 경제 활동으로서 자유롭게 연어를 아이누가 취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이 내려졌다.

(1) 어획권 재판의 배경

매년 가을에 대량으로 강으로 거슬러 올라오는 연어는 아이누에게 1년 치의 식량이 될 뿐만 아니라 의복이나 신발의 재료가 되어 생활을 지탱하는 중요한 물고기로서 ‘카무이체프=신의 물고기’라고 불렸다. 그러나 메이지 이후 일본인이 아이누의 영역에 정주하게 되고 어업자는 증가하는 가운데 연어의 개체 수가 격감, 메이지 정부는 자원 보호 등을 이유로 강에서의 연어잡이를 단계적으로 금지하여 메이지 16년에 도카치강 하류에서는 고기잡이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생활 양식을 빼앗긴 아이누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거나 농장 등에 고용되어 일하게 되자 이는 아이누의 사회를 크게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 정부는 2019년에 ‘아이누 시책 추진법’을 시행하여 아이누 민족을 처음으로 ‘선주 민족’으로 인정하고, 독자적인 문화를 살린 지역 진흥 등을 추진하게 되었지만, 토지와 자원에 대한 권리는 법에 포함되지 않았다(NHK 2024/04/17).

세계 각국에는 동화정책 등으로 억압당한 선주민의 권리를 인정하는 움직임과 불평등을 시정하는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미국에서는 서부 워싱턴 주에서 1974년 인디언이라고 불리는 원주민이 연어 포획권의 회복을 요구하며 주정부를 상대로 한 재판에서 승소했고, 원주민 이외의 사람들과 평등한 어업권을 인정받은 것 외에 원주민이 스스로 자원 관리를 실시하는 어업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캐나다나 북유럽 노르웨이 등에서는 헌법에 원주민 규정이 명기되어 토지나 자원을 사용할 권리나 자치권 등이 인정된다. 뉴질랜드에서는 영어 외에 원주민 마오리의 말, 마오리어를 공용어로 정하고 있으며, 어업을 둘러싸고 마오리의 권리를 보장하는 전문 기관이 설치되어 있다. 한편, 최근 호주에서는 지난해 10월 선주민의 목소리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전문기관 창설을 포함하는 헌법 개정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가 실시된 바 있다. 투표 결과 반대 다수로 부결되어 선주민을 둘러싼 과제 해결의 어려움이 드러나기도 했다(NHK 2024/04/17).

(2) 재판 과정에서 쌍방의 입장

원고인 '라포로 아이누 네이션'은, 도카치강 유역의 아이누의 단체로, 대부분의 구성원이 태평양에서 어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명예회장을 맡고 있던 사시마 마사키(差間正樹) 씨가 판결을 보지 못한 채 73세의 나이로 사망했으며, 재판을 계승하게 된 조카 사시마 히로마사(差間啓全) 씨(57)는 '원래 있던 권리가 나라에 불합리하게 박탈되어, 지금은 고기잡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가 권리를 인정받고 연어에 부가가치를 붙여 라포로 아이누네이션 브랜드로 판매해 나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라고 말한다. 나아가 '홋카이도에 아이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아이누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며, 국가는 제대로 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아이누로서 가슴을 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라고 호소했다. 또, 단체의 전 회장인 나가네 히로키(長根弘喜) 씨(39)는 '아이누로서 물고기를 잡고 싶다고 하는 생각도 물론 있습니다만, 생활을 안정시키는 의미에서도 권리를 인정받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이누가 주체가 되어 강의 자원을 관리하고 화인들과 공존하는 규칙을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재판을 계기로 각지의 아이누 사람들도 자신들의 권리를 찾아 나섰으면 합니다'라고 말했다. 3년 반여에 걸친 재판에서 원고 측은 아이누의 역사적인 배경을 언급하며 연어를 잡을 권리를 인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강에서의 연어 포획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아이누의 의식 등 문화 계승 및 보존의 목적이나 어업인의 채란 목적에 한하여 도(홋카이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도카치강 부근에서는 예로부터 아이누가 연어를 잡았던 것이 문헌 등에 기록되어 있고, 원주민으로서 연어를 잡을 권리가 있는데 메이지 이후 정부가 그것을 무시하고 고기잡이를 금지했다고 주장한다. 고기잡이를 금지하는 법적인 근거는 없고, 경제활동으로서의 연어잡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 국가와 도는 강에서 산란하는 연어의 특성상 규제는 필요하고, 고기잡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후, 의식을 위한 고기잡이는 인정하고 있어 아이누의 문화를 향유할 권리도 배려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 측은 원주민 권리 회복은 국제적인 흐름이라

고 하여 2007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선주민 권리에 관한 선언’에서도 ‘선주민은 전통적으로 소유하는 등의 자연 자원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지적하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측은, ‘선언에 법적인 구속력은 없고, 각국의 상황에 비추어 봐도 국제사회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권리가 확립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NHK 2024/04/17).

IV. 아이누 독점적 어업권 주장의 역사적 배경

(1) 메이지 이전

아이누의 어업권 주장에는 기나긴 역사적 배경이 존재한다. 아이누는 수렵하는 민족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이누의 전통지식은 아이누가 전적으로 수렵만을 행하는 민족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은 농사를 지었으며 그들의 식물 분류 체계에는 그들만의 논리, 자연 인식의 체계 등이 드러난다. 아이누 출신으로 도쿄대학을 졸업한 지리 마시호(知理眞志保)의 저작에는, 첫째, 아이누의 식물 관련 어휘에는 아이누어의 어형과 액센트, 어원 등이 나타나며, 둘째, 식물의 채집지역 또는 사용지, 식물이용법이나 그에 따른 감정, 신앙, 풍속 등이 포함되어 있다(知理眞志保 1953, 140).

와타나베 교지(渡辺京二)에 따르면, 13세기 이후 홋카이도 지역은 산업과 문화 모든 측면에서 일본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渡辺京二 2010, 136-138). 아이누는 일본 경제의 하부구조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쓰마에 번이 아이누 사회를 경제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중앙의 막부나 인근의 타 번으로부터 군사력 보강이 가능했다는 점과 아이누 사회가 중앙집권화 되지 않았다는 점에 큰 요인이 있었다. 일본인들은 아이누의 촌장들과 교섭하는 정도로 대 아이누 교역의 컨트롤이 가능했다. 아이누 생활권과 북부 일본 사이에는 다양한 교역 루트가 존재했고, 이것은 마쓰마에 번이 독점하는 교역 시스템을 거쳐야 하는 방식으로 제한되었으며, 교역 허가를 받은 일본상인은 독점적이고 높은 가격책정이 가능했다. 아이누 민족이 수렵을 특화한 것은 농업생산법을 몰랐거나 환경조건이 농업에 적합하지 않

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수렵채집을 특화하는 방향을 선택했으며, 그것은 주로 일본에서 수입하는 철기, 칠기(漆器), 쌀, 면(麵)에 대한 대가로서 연어, 모피, 독수리 깃털, 다시마 등의 생산을 특화하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이다(김석희 2018, 29-60).

마쓰마에 번을 통해 아이누의 청어 어획과 건조를 유도해 낸 일본 측은 자신의 생산으로 큰 이익을 보았다. 또한 이를 유지하기 위해 아이누의 농업 활동 자체를 근절하려고 하였다. 18세기 후반까지 아이누의 생활영역에 씨앗을 반입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었으며 그들을 원시적 수렵 채집 생활에 갇힐 수밖에 없었다(最上徳内 1972, 315; 瀬川拓郎 2007, 91-92). 메이지(1868-1912) 초기인 1869년부터 본격적으로 일본인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아이누의 오랜 전통과 관습들이 반강제적으로 사라지거나 억압 받게 되었다. 불합리한 교역으로 인한 일본인과 아이누 간 갈등이 심화되었다. 또한 근대 초기에도 홋카이도는 러시아 등 서구의 개항 요구에 따른 위협을 대비한 일본정부의 외교적 수단으로 이용되었으며 일본 정부의 동화정책도 아이누를 일본인화 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기보다 일본인 개척민과 병사 수를 늘려 홋카이도 지역을 일본 영토에 편입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오구마 2003, 51-55.)

(2) 메이지 이후

메이지기가 되면서 일본 정부는 홋카이도에 개척사(開拓使)를 설치했다. 본격적으로 이주민들을 보내 개척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홋카이도를 일본의 새로운 영토로 포섭한다. 이들은 ‘보호정책’과 ‘동화정책’이라는 틀로 아이누를 일본인화 하였다. 1871년 호적법 공포, 농기구 등의 부여, 입술문신 금지·귀장식 금지·연어잡이 금지·일본식으로 이름 개명 등 전통습관의 규제, 일본어 교육 등을 실시했다. 공문서에 ‘구토인(旧土人)’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선주민족으로서의 자리 없애기 정책’을 강요하였으며 1872년에는 홋카이도도 지매매규칙(北海道土地賣買規則)과 홋카이도지소규칙(北海道地所規則)을 공포해서 생활의 근간이었던 공유지를 일본인의 사유지로 규정하였다(윤용택 2001, 132). 1899년에 통과되어 1997년에 폐지되기까지 98년 동안 존속되었

던 홋카이도구토인보호법은 아이누의 공동자산이 정부의 관리 대상이 되었음을 의미했다. 아이누 민족의 문화도 국가차원에서 반강제적으로 변형되었다. 또한 아이누의 생업이었던 야생동물에 대한 사냥(곰, 사슴 등)과 어업(연어잡이 등)을 정부가 관리하고 법으로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활과 전통어구들을 이용할 수 없게 되고 수렵기간이나 포획수 등도 규제되었다. 결국 아이누의 다수가 농업이나 일용직 노동자로 전향하였다(김석희 2017).

‘홋카이도구토인보호법(北海道旧土人保護法)’의 주요 내용은 “모든 아이누 가족 1호당 6천~1만 5천 평의 미개간지를 농업용으로 부여하고 농기구 구입비로 20엔을 지원하고 처음 몇 년 간만 종자 구입비로 약간의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토지를 부여받고 15년 이내에 개간되지 않은 토지는 정부가 몰수한다.” 그리고 “아이누 촌락을 위한 학교와 보건소를 설립하고 교과서와 물품 구입비로 개별 가족에게 약간의 비용을 지불한다.” 그러나 법안 제1조에서는 보호 대상을 농업으로 한정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아이누가 많이 거주하는 곳에 초등학교를 세우라고 하면서도 교과목에는 아이누어를 포함하지 않았다. 이러한 조항에 대한 연구자들의 일반적인 평가는 ‘아이누의 전통 생업이 수렵이고 독자적인 언어를 가진 민족임을 인정하지 않는 항목’이라는 것이다(『北海道新聞』 2024/04/19).

V. 아이누의 독점적 언어어획권 주장의 의미

2019년 시행된 아이누시책추진법은 법률로서 처음으로 아이누 민족을 ‘선주민족’으로 명기했지만, 선주권을 보장하는 법률은 없다. 하천에서의 언어 포획은 수산자원보호법 등에서 금지되며 도는 전통의식 계승 등의 목적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데, 이 재판에서는 그 제도의 타당성이 쟁점화되었다.

피고 측은 ‘언어의 고갈을 회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규제’, ‘아이누의 언어잡이와 관련되는 문화를 향유할 권리도 배려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판결은 개인의 존중을 보장한 일본국 헌법 13조에 따라 아이누 고유의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 점은 일보 전진이라고도 할 수 있

지만, 연어 포획권은 ‘재산권으로서의 측면이 강하다’는 이유로 제외시켰다. 문화 전승이나 의식 등을 할 때의 연어 포획은 인정하지만, 경제 활동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과 같다. 원고 측은 ‘생활과 문화는 분리할 수 없다. 매일의 생활 속에서 길러진 것이 문화로 승화해 간다. (판결이) 거기를 분리한 것이 제일의 문제다’라고 비판한다. 아이누 민족이 연어잡이를 빼앗긴 역사적인 경위에 대해 언급을 피하고, ‘법률상의 쟁송에 해당하지 않고, 부적법’하다고 반론했다. 아이누 민족이 ‘신의 물고기’로 아끼는 연어는 중요한 식량이자 의복의 재료가 되기도 했다. 선주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논의가 되면, 토지의 소유권 등 광범위·다방면의 논점이 예상된다. 일본 국회가 2008년 통과시킨 아이누 민족을 선주민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는 지식인들의 의견을 들으며 아이누 정책을 더욱 추진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확립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아이누 민족을 둘러싸고는, 19세기부터 20세기에 걸쳐 연구자가 유골이나 부장품을 도굴한 사실이 있어, 일본 문화 인류 학회는 올봄에 과거의 연구 자세를 사죄한 바도 있다.

일본 정부와 홋카이도 당국의 태도와는 달리 일본의 언론 지형은 조심스럽지만 아이누의 선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분위기로 파악된다. 『홋카이도신문』은 물론, 『아사히신문』(2024/04/15)은 ‘아이누 민족의 ‘선주권’을 둘러싼 최초의 판결에 대하여, 연어 어획의 권리회복을 위하여アイヌ民族の「先住權」めぐる初の判決へ サケ漁の權利回復を求めて’라는 기사를 내고 ‘선주민’임을 인정하면서도 ‘선주권’은 인정하지 않는 당국을 비판하였고, 『마이니치신문』(2024/04/18)은 아이누가 에도시대부터 삿포로 유역에 코탄(마을을 의미하는 아이누어)을 형성하고 살았음을 강조하였다. 아이누의 연어 어업에 관한 소송에서 연어 산란을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일본 재판부의 기각 사유는 얼핏 타당하게 보이며, 전통적 방식의 산업을 인정하지 않고 소수 민족의 선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개념은 상호충돌하는 것인가?

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아메리카 인디언의 예를 상기하고자 한다. 미국과 캐나다 정부는 1960년대에 콜롬비아강과 관련된 공동이익을 위하여 콜롬비아강 조약(The Columbia River Treaty)을 체결하였다. 콜롬비아강은 캐나다에서 시작하여 미국 서부를 거쳐 태평양으로 흘러가는데, 이 강과 관련하

여 양국 정부가 맺은 조약에는, 정작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즉 콜롬비아강 상류의 인디언 부족들이 빠져 있었다. 댐 건설 전과 후의 그들의 삶은 큰 변화를 겪었다. 콜롬비아강 상류 인디언은 사막으로 변한 환경에서 80여 년의 세월을 생존을 위해 필사적인 투쟁을 계속해야 했다.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2022년에 새롭게 개정된 콜롬비아강 조약에는 인디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었다.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의 자치권을 인정한 것이며, 강을 매개로 생산되는 경제적 이익을 선주민에게 할당한 것이다(노현균 2022).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은 이제 세계적으로 확장, 정착되었으나 진정한 문화다양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이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일본의 아이누 독점적 어업권 청구소송은 이런 의미에서 문화적 수용과 경제적 허용 사이에 놓은 높은 벽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VI. 결론

기후변화로 인해 수온이 상승함에 따라 북극해 인근지역인 홋카이도의 연어 어획량이 충격적인 수준으로 줄어들어 따라, 연어의 독점적 어획권을 ‘선주권’의 일환으로 요청하는 소송이 일어났다. 일본 정부는 선주권을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하고도, 실질적으로 선주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선주민들의 어획활동 요구는 ‘공공재’라는 재산권의 입장에서 제한하였다.

이는 첫째 자의적인 법률 적용이라는 비판의 소지가 있다. 둘째, 선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역사적인 측면을 검토하자면 아이누가 어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든 것도, 어업을 할 수 없게 제한한 것도 일본이었다는 점에서 아이누에게 경제적 자치권을 용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셋째, 콜롬비아강의 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선주민들의 전통철학과 지혜를 활용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마쓰마에 번이 그렇게 강력하게 아이누의 산업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군사적 우위와 아이누 사회의 형태(집권화 되지 않은 사회형태)를 배경으로

했다. 아이누 민족은 13세기 이후 일본과의 접촉에 의해 수렵을 전통산업으로 삼게 되었고 메이지 시대 이후로 일본에 편입되어 다수의 아이누 사람들이 이번에는 일본의 곡물 생산을 위한 일용직이 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일찍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아이누의 농업을 강제로 금지하기도 하고 어업을 권장하기도 하고, 권장했던 어업을 임의로 금지시키기도 했다. 현재의 아이누 민족의 산업은 관광업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이 역시 아이누 민족 자체의 필요와 자발성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 컸다. 현대에 들어오면서 소수민족 문제가 세계적인 문화 다양성 정책으로 초점이 옮겨가는 과정에서 민족문화는 자기 정체성을 표상하는 동시에 관광산업의 형태로 생계유지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아이누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화 계승과 발전의 과정에서 그들을 침략했던 일본인들의 아이디어와 지원(투자)으로 아이누의 민족문화가 정립되고 있다는 점 역시 아이러니하다고 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단순히 문화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까지 그 영향하에 있음을 시사한다. 소수민족의 문화를 보호한다는 정책은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정치적으로 독립되지 않은 민족집단의 문화는 결국 권력에 귀속되고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 아이누 민족의 문화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정치적 자치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도 기후변화는 국가 간의 분쟁이슈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생업과 현실의 차원에서도 각 국가 내부의 분쟁의 요소가 될 수 있다. 아이누민족의 독점적 어업권 청구 소송은 현재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SDGs)은 국가와 정치의 관계를 다각화해야만 가능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참고문헌 |

1. 논문 및 단행본

- 김석희 (2018). “18-19세기의 환동해지역과 하코다테(函館)의 공간위상.” 『일본사상』, 제34권, pp. 29-60.
- 김향섭 (2017). “안데스 원주민 운동과 공동체 경제: 에콰도르 사례를 중심으로.” 『이베로 아메리카』, 제19권, 1호, pp. 41-67.
- 노현균 (2022). “언어의 부활을 통한 인디언 경제 문화재건: 서만 알렉시의 「낚은 셔츠와 새 피부」,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돼요: 비망록」, 영화 <물로 연합하다>를 중심으로.” 『코기토』, 제97권, pp. 195-225.
- 서지현 (2024). “관광 산업과 ‘허락된 원주민’: 쿠스코 친체로 직조 센터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베로 아메리카』, 제35권, 1호, pp. 107-130.
- 오구마에이지 (2003). 『일본 단일민족신화의 기원』. 조현설 역. 소명출판.
- SLEPCHENKO, VADIM (2022). “러시아연방 북극 원주민의 지속가능한 발전: 추코트카 자치구 중심으로.” 『아태연구』, 제29권, 4호, pp. 67-90.
- 渡辺京二 (2010). 『黒船前夜』. 東京: 洋泉社.
- 瀬川拓郎 (2007). 『アイヌの歴史・海と宝のノマド』. 東京: 講談社.
- 知理眞志保 (1953). 『分類アイヌ語辭典,植物編』. 東京: 日本常民文化研究所.
- 最上徳内 (1972). 『蝦夷草紙(北門叢書第一冊)』. 東京: 國書刊行會.

2. 기타

- “日 연어 어획량, 전년대비 10%대 급감… ‘온난화 기상이변 여파.’” 『아시아경제』, 2023년 11월 22일.
- “アイヌ民族の「先住權」めぐる初の判決へ サケ漁の權利回復を求めて.” 『朝日新聞』, 2024년 4월 15일.
- “アイヌ民族の先住權 世界見据え議論深めたい.” 『北海道新聞』, 2024년 4월 19일.
- “アイヌ先住權訴訟 歴史的背景や裁判の論点など.” *NHK*, 2024년 4월 17일.
- “アイヌ先住權訴訟 原告側の訴え退ける 札幌地裁判決.” 『毎日新聞』, 2024년 4월 18일.
- 가에리아마 마사히데. <https://www.youtube.com/watch?v=fBCe-OXWdtE>. (2023년 12월 24일 검색)
- 일본기상청. “홋카이도 지역의 해수면 평균 수온 변화 추이.” https://www.data.jma.go.jp/kaiyou/data/shindan/a_1/japan_warm/japan_warm_larea.html?larea=1.

66 아태연구 제31권 제2호 (2024)

(2024년 5월 14일 검색)

| 논문투고일 : 2024년 05월 19일 |

| 논문심사일 : 2024년 05월 22일 |

| 게재확정일 : 2024년 06월 13일 |

| ABSTRACT |

Ainu Exclusive Fishing Rights Lawsui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limate and Environmental Background, Historical Background, and the Meaning of Sustainable Development

Seokhee Kim

(Humanitas College, Kyung Hee University)

This article aims to reconsider the meaning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in the context of the recent ruling in Japan regarding the Ainu people's losing the legal battle over exclusive fishing rights against Hokkaido and the Japanese government, based on the environmental and historical background. First, the environmental context of the case is deeply linked to rising water temperatures and declining fish stocks due to climate change and historically linked to the Japanese government's arbitrary and violent industrial restrictions and colonization since the 13th century. The Japanese government recognizes the indigenous rights of the Ainu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which is a global issue. However, the recent ruling to reject the Ainu's claim lawsuit reveals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is very conservative and centralized in economic terms (as opposed to language and traditional culture). The ultimate goal of multiculturalism is not to simply lock indigenous peoples in the past and use them as tourist resources. The loss of the Ainu people's lawsuit for exclusive fishing rights not only illustrates the barriers between cultural identity and autonomous economic rights, but also points the way toward the idea that true indigenous rights must include political and economic independence.

68 아태연구 제31권 제2호 (2024)

- Key words: Climate Change, Salmon, Hokkaido, Ainu, Indigenous Rights